■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3] <신설 2014.11.19.>

과정평가형 자격 외부평가 방법(제20조의2제2항 관련)

자격 등급	검정방법	
	1차시험	2차시험
1. 기술·기능 분야		
기술사	주관식 또는 객관식	작업형 실기시험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2. 서비스 분야		
전체 등급	주관식 또는 객관식	작업형 실기시험

※ 제2차시험의 경우 작업형 실기시험과 함께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